#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52 발의연월일: 2024. 9. 10.

발 의 자:윤준병・임호선・박희승

이병진 · 서영교 · 이춘석

허종식 • 한병도 • 이재관

정동영 • 이정헌 • 한창민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빈곤층 등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160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개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급수인구와 재정 등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수도요금 등 수도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급수인구 30만명 이하의 소규모 지자체는 77%에 달하는 12 4곳이며, 10만명 이하는 87곳(54.3%)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소규모 지자체는 급수인구가적고 관망이 길어 생산원가가 높고 자립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 및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수도사업의 운영·관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수도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제1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75조제2항 신설).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11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제12조의3(소규모 수도사업 통합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둘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 및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의 운영·관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을 통합하여 운영·관리하는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한 다.

제1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설치하는 지방상수도: 환경부장관

제7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제12조의3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수도사업을 통합 운영·관리하는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20118호 수도법 일부개정 법률 제20118호 수도법 일부개정 법률 법률 제12조의3(소규모 수도사업 통합 <신 설>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 차 해소 및 지속가능한 수도공 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의 운영 · 관리를 통합 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을 통합하여 운영 · 관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5 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을 통 합하여 수립한다.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군수는 광역시

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 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 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1. (생략)

<신 설>

 2. ~ 5. (생 략)

 ② ~ ⑤ (생 략)

제75조(국고 보조 등) (생 략)

<신 설>

•	

- 1. (현행과 같음)
- 1의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지방자기단체가 통합 설치하는지방상수도: 환경부장관
- 2. ~ 5.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75조(국고 보조 등) <u>①</u>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국가는 제12조의3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소 규모 수도사업을 통합 운영· 관리하는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